

2021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Contents

2020 개인정보보호 이슈

- 편견·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디지털 활용 투명성 확보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 개인정보 이동권, 마이데이터 등
정보주체의 능동적 참여·권리 확대
- 감시사회, 기술 고도화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 확립
- 2020총선,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대비
유권자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데이터 기반 경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실효성 제고
-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성숙한 개인정보 규제문화 정착
-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 및 법령 통합,
新 개인정보 보호 시대

2021 개인정보보호 이슈

- 1 코로나19시대 K-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 2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동의제도 수립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이동권 현실화
- 4 영상정보 활용 보편화에 따른
新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 구축
- 5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뉴딜 정책 지원
- 6 가명정보 도입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시대 본격화
- 7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 +1 -



조사 개요

조사목적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IT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이슈도 급증
- ▶ 지난 1년간 키워드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방법

Research & Reports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다루어진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이슈 중 관련 키워드 추출

20 Keywords

개인정보보호 이슈별 유사성, 중복성 검토 및 최근 국내외 동향, 세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요 키워드(20개) 도출

50 Survey

개인정보 전문가(50명) 대상 설문 및 최근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이슈 분석 등을 거쳐 최종 2021년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선정

7대 이슈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국내외 언론, 연구보고서 등의 키워드 사전조사	내외부 검토를 통한 주요 키워드 도출	전문가(50명) 설문을 통한 7대 키워드 도출	7대 키워드 관련 최근 동향, 자료 등 분석	전문가 검토 및 7대 이슈 최종 선정



2020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01 코로나19와 개인정보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우수한 방역활동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으나, 한편으로 방역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공개, (수거)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미파기 문제, 국가기관의 과도한 정보접근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함

02 가명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이용의 근간이 되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03 동의

한국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신기술 기반의 4차산업 환경에서는 동의요건 및 방식이 매우 복잡하거나, 사실상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동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04 개인정보 유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 분야 모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지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가 부각됨

05 불법유통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추적 등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다크 웹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시급

06 개인정보 관련법(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일부) 등 일명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일반법으로서 입법 체계상의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를 위한 재 개정 요구 증가

07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의 국내 도입 검토 요구 증대

08 개인정보 거버넌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면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DPA) 활동도 강화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체계가 일원화되고 관련 기능이 강화됨

09 자율규제, 자율보호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자율규제 단체의 지정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분산된 자율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등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사업 촉진 필요

10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수립 및 법·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



2020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11 위치데이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방역당국의 개인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에 감염병 대응 차원의 위치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과도한 국가 정보 접근이라는 입장이 대립

12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보건복지부 등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등이 환자로부터 수집한 건강 및 의료 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함

13 개인영상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웨어러블 카메라,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기기 및 지능형CCTV 등이 보편화되면서 현행법으로는 개인영상정보 규제 및 보호에 한계 발생, 이에 따른 새로운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 필요성 증가

14 아동 개인정보보호

소셜미디어(틱톡, 유튜브 등), 인공지능 스피커, 커넥티드 장난감 등에서 다양한 아동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사전 동의에도 한계가 있어 대응책 필요

15 처벌규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사고 발생 시 과징금/과태료 외에도 한국에서만 형사처벌 제도를 두고 있으며, 데이터3법 통합 후에도 정합성이 맞지 않는 처벌 조항에 대한 재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6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활동으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반면, 데이터 불법유통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도 제기

17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19. 6.)

1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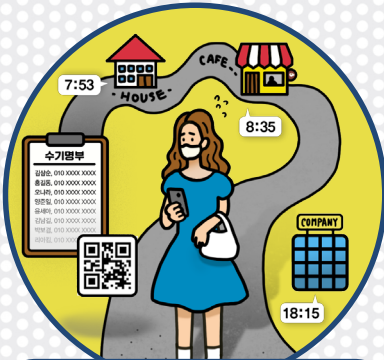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처리 기술 발전으로 정교하고 광범위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져,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또한 증가

19 국내 대리인 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 및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웹사이트나 앱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20. 3.)

20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다양한 데이터 보호 조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 GDPR에서는 계약에 의해 외부전문가를 DPO로 지정토록 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코로나19 시대
K-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2021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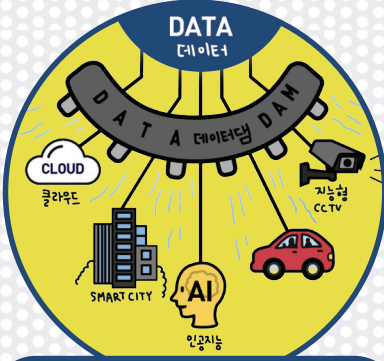
2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동의제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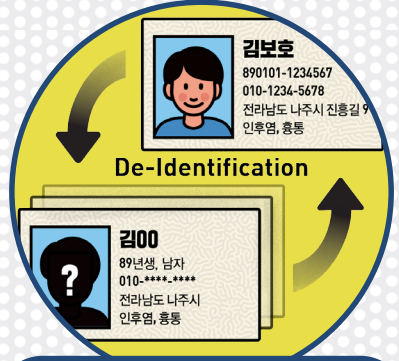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현실화



4 영상정보 활용 보편화에 따른
새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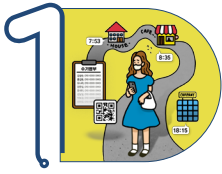
5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뉴딜 정책 지원



6 가명정보 도입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시대 본격화



7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코로나19 시대 K-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연관키워드

출입명부 개인정보/ 확진자 동선공개/ 국가기관의 정보접근/ 비대면 사회

배경

- ▶ 2019년 12월 처음 발견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많은 사상자 발생
- ▶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K-방역’이라 불리우며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정부의 체계적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 그러나 방역활동에 따른 확진자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파악,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명단작성 등을 위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면서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논란 발생
 - * 역학조사 활용정보 : 위치정보(이동통신 정보), 진료기록, 신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내역, CCTV 영상 등
- ▶ 코로나19로 원격근무, 온라인수업, 인터넷쇼핑, 온라인금융거래 등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증대
 - ※ 재택/원격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응답은 36.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0.9%) 대비 3배로 나타남(『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현황 및 이슈

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6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는 우선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가능
- 또한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공공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 정보주체 권리보장(제5장) 등 적용의 일부를 제외

명부 작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 수기로 작성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명부 미파기 문제 발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발표(’20. 9.11)

*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성명’ 삭제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내용 포함

동선 공개 K-방역은 방역당국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목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쳐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관련 위원장 성명 발표('20. 3. 9.)

-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지 않도록*, 개인정보위, 지자체(28개), KISA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방역단이 유포·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 추진

*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나이, 주소지, 가족정보 등)가 담긴 공문서 인터넷 유포 사건 발생

**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노출 게시물 8,839건 탐지 및 8,594건 삭제('20. 5~11)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정보공개 기준 정비 및 확진자 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자발적 동선 삭제 캠페인 등 진행

※ 확진자 개인정보 침해요소 최소화를 위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마련·배포('20.6, 질병관리청)

※ 확진자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20. 9. 시행)



비대면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협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원격근무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 재택·원격근무 시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6대 실천수칙(과기부) 및 원격수업 보안 패치·백신 배포, 개인정보 보호 포함 실천수칙(교육부) 마련·배포

※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원격접속 모니터링 강화, 재택근무자 보안지침 안내 등

- 비대면 서비스 주요 화상회의 및 학교 연계 앱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조치 실태점검 추진 및 개선 요청

- 코로나19 위기 상황 동안 정부와 각 기업의 보안정책과 현황 및 유용한 웹/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ISA 코로나 안심정보' 홈페이지(www.kisa.or.kr/covid19) 운영

국제 대응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의 이동경로 추적 및 확진자 동선정보 공개 등으로 국민의 인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 우려 발생

- OECD, APPA, GPEN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K-방역 우수성과 함께 법·제도적 근거에 따른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소개

※ OECD WPDGP 코로나19 대응 개인정보 보호 활동 소개('20. 4., '20. 9.), APPA 회원국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률 체계 및 현황 공유('20. 6., '20.12.) 등

향후 대응

①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공공의 건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에 근거한 엄격한 개인정보처리 절차 준수 및 보호 노력 필요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도용의 급증이 우려되므로 선제적인 대처 방안 및 취약·영세 개인정보처리자 컨설팅, 교육 등 예방책 검토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동의제도 수립

연관키워드

선택·필수동의/ 보호법 vs. 개별법 동의/ 신기술 환경에서 동의

배경

- ①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엄격한 사전 동의 원칙하에 명시적·개별적 동의방식과 선택·필수 동의를 요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 수준 채택

 - 정보주체 관점에서는 복잡한 고지사항과 절차 등으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동의하는 상황 발생*

* 정보주체의 66.1%는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38.0%)'해야 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워서(34.7%)',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22.9%)'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음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② 개인정보처리자 중 민간기업의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내용의 토대가 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리(공개 및 갱신) 부실*

*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인 48.5%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 기업(51.5%)의 경우에도 갱신 시기가 최근 1년 이상인 기업이 57.7%, 작성 이후 갱신한 적이 없는 기업도 24.8%에 달함(「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③ 또한, 신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유 등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사전 동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기반 신기술은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상시적으로 활용되는 구조

현황 및 이슈

- ④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가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 및 고지 제도 개선 논의
- ⑤ 글로벌 표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처리'로 통합하고, 처리 단계별로 동일한 적법 처리요건을 적용하도록 정비 검토

예) 물품 구매 계약 시 물품배송 등 계약 이행에 따른 제3자 제공시에는 계약체결 및 이행,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처리 가능
- ⑥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필수동의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 규정인 수집·이용으로 일원화 검토

- ▶ 정보주체 관점에서 복잡한 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현행법상 산재되어 있는 동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예 취약·소외계층(아동·노년층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독려

※ 참고: 포털사 N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EASY 버전'과 '인포그래픽 버전'으로 제공

네이버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EASY버전'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EASY버전'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인포그래픽' 그림으로 쉽게 만나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인포그래픽' 바로가기
--------------------------	--	---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사전 인증제 또는 사후 심사제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추진 검토

향후 대응

- ▶ 국내외 법제 동향과 기술 환경, 사회적 합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동의 제도 정비 추진
 - 신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방식이 활용되며, 기술 발전 가속화로 동의 이슈도 세분화되고 있어 신기술 서비스별 동의 규제 합리화 중장기 연구 필요
 - 장기적으로는 해외 및 국제기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전-사후 동의 규제 균형을 감안한 전반적인 동의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현실화

연관키워드

마이데이터/ 데이터 오너십/ 빅데이터 플랫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배경

- ▶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통·활용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요청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 증대
 - ※ 회원수가 3,200만 명에 달했던 '싸이월드' 서비스가 2020년 종료되면서 본인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내용을 담은 일명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이 발의됨('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7.)
- ▶ 정보주체의 43.8%는 국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18.4%)의 두 배 이상으로 조사됨('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 기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제3의 기관, 기업, 단체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2019 마이데이터 현황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9.12.)
- ▶ 유럽연합은 2016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면서 정보주체 권리보장, 데이터 독점 완화 등을 위해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
 - OECD, IWGDPT 등 국제기구 및 협의회 및 미국 FTC 등도 '데이터 이동권'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법제 환경 정비 및 데이터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 계속
 - ※ 미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20년 9월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의 잠재적 이점(benefit)과 도전과제(challenge)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워크숍(Data To Go)을 개최

현황 및 이슈

- ▶ 2020년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 정보의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규정을 신설
 - 2020년 7월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에는 5대 시중은행, 빅테크 자회사, 주요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 63곳이 참여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 반영
 - * 마이데이터 :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 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것
- ▶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기준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법 적용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일관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국내외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법제 동향

- (한국) 금융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유럽) GDPR 제20조에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도입
- (미국) CCPA 제정을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규정
- (일본) 개인데이터 유통체계 '정보은행' 산업 장려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하되, 이동권 범위를 한정하여 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 등

향후 대응

-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산업 분야별 특수성과 적용 기관의 실정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논의 진행
 - ※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21년 2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휘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공공기관, 신용정보 관리회사는 데이터 전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나 인프라 전환이 준비되어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전자신문, '20. 12. 8.)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프로파일링 거부권' 도입도 검토
 - ※ 정보주체의 70.7%는 '프로파일링 거부권' 도입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영상정보 활용 보편화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 구축

연관키워드

영상정보/ 지능형 CCTV/ 이동형 영상기기/ 감시

배경

- ▶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수사 등의 목적으로 공공·민간기관의 영상기기 설치·운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
 - ※ 개인 및 타 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가 공공기관은 53.4%, 민간기업도 29.1%로 나타났으며, 열람을 요구 받은 공공기관의 41.7%, 민간기업의 42.3%는 열람관련 업무 수행 예산/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열람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됨(「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 영상기기의 성능 향상 및 보편화로 자녀 양육, 독거 어르신 보호, 반려동물 확인 등 다양한 용도의 가정용 CCTV 사용도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도 심각
 - ※ CCTV 등 영상기기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주체는 4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사생활 안전 18.6%)의 2배로 나타남(「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 영상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시민 감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이슈도 급증하고 있으며, 해킹이나 사용자 부주의 등에 따른 가정 CCTV 영상정보 유출사고 발생
 - ※ 2019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현황을 보면, CCTV 설치·운영 관련 신고·상담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약 4,800건이 접수됨
- ▶ 또한,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 지능형 CCTV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대규모 영상정보 유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
- ▶ 한편, 지역 시민의 이동 경로와 활동이 기록되는 CCTV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 ※ 국회입법조사처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19.11.)에 따르면, 2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현황 및 이슈

- ▶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어렵고, 영상 내 다수의 정보주체를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개인정보위 및 KISA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영상정보와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이동형기기 규율**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정의 및 촬영요건을 신설하고,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와의 유기적 논의를 통해 분야별 대책 마련
 - 안전한 활용수단** 영상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낮고 책임성, 투명성 등 기본원칙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후통제 강화 공공 중심의 CCTV 설치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이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후통제장치 마련

통합관제 근거 공공·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 CCTV 관제시설에 대하여 영향평가 의무화, 관제요원 자격 및 교육 등 대규모 CCTV 관제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영상정보주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피해자 등)도 보관 및 열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 불편 해소장치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및 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만 열람청구가 가능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에도 가해자 동의 없이는 피해자의 CCTV 영상열람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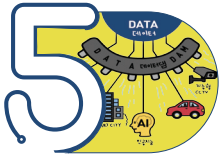
기타 현행법상의 한계로 처리 규정이 명확치 않거나, 해석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부적인 CCTV 관리·운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근거 마련 논의

향후 대응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규율상 일부 한계 해소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16.2.~8.)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16.12.),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17.2.~11.)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17.12.)하였으나, 일부 반대로 20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

-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영상정보 수집·이용 이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에 개인정보 처리근거 신설을 병행하는 등 소관부처와 분야별 협력 병행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사업은 지능형 CCTV 등 많은 센서들이 도시에 설치되면서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가능



신기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뉴딜 정책 지원

연관키워드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데이터댐

배경

- 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확산과 새로운 유형의 촬영기기 등장, 스마트 시티 활성화 등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 및 침해 요인 다양화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 회복 등을 위한 범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관련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데이터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
- ② 특히, 코로나19는 산업 전반에 강제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등의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 마련
 - 펜데믹 시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예측,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신약개발 등 국가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쳐 AI·빅데이터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 (2020 AI TREND WATCH: 인공지능, 코로나19를 만나다, KISDI, '20.4.)
 -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신산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규제에 막혀있던 원격진료가 급물살을 타는 등 4차산업 혁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짐('코로나가 4차산업혁명 방아쇠 당겼다', 한국경제, '20.5.3.)

현황 및 이슈

-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분류하고 분야별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 가능 요소 도출
 - 대량·자동 수집** 신기술 기반 서비스는 기기간 상호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이 많아 정보주체가 그 수집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움
 - 과도한 정보접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들은 기기 내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 발생
 - 처리주체 모호** 신기술 기반 서비스는 상당수가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해외 기관에 개인 정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어려움 존재
 - 사전동의 어려움**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보호조치 검토 필요

신기술 및 신서비스 유형(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관계부처 합동)

신기술 유형

- 기초과학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모바일
- 응용기술: 블록체인, 웨어러블, AR/VR, V2X 등

신서비스 유형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환경, 맞춤형교육, 의료, 바이오 등 14개 분야

- ⑤ 데이터 기반 신기술 확산에 대비하여 정보주체 권익 보호 및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 유도를 위한 신기술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단계적 추진('20년~'22년)

제정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라인('20년)
-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 보호 수칙('21년)
-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년)
- 자율주행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년)
-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2년)

개정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년)
-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년)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1년)

향후 대응

- ⑥ 로봇·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이동형 영상기기 등 신기술 및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수립 등 신기술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 로봇·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신기술별 개인정보 보호방안 및 기준 도출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슈 발굴 및 유형별(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등
- ⑦ 데이터댐 구축, 인공지능, 스마트의료 등 개별 사전 동의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사안별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규제 개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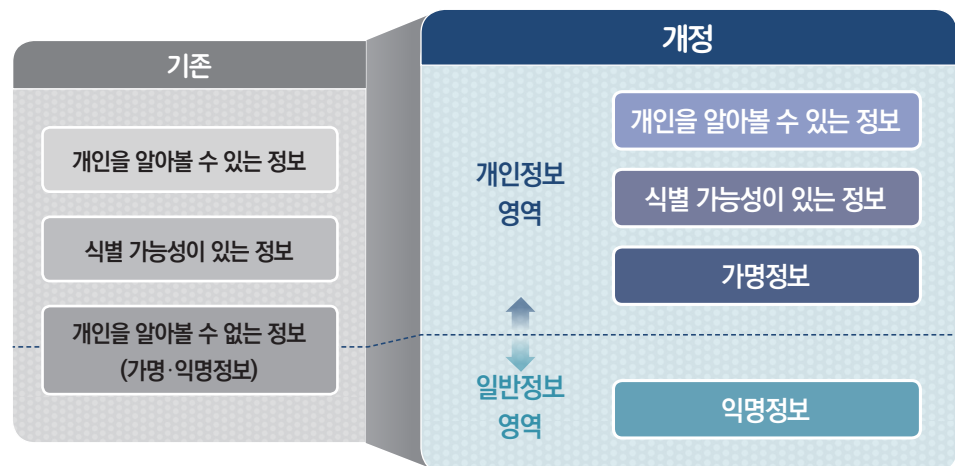
가명정보 도입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시대 본격화

연관키워드

비식별화/가명정보 결합/산업적 목적 활용/익명정보

배경

-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2020년 8월 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가명정보' 개념이 새롭게 도입됨
 - 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 (참고)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⑥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은 47.5%(계획 있음 13.2%, 검토 중 34.3%)였으며, 민간기업은 37.5%(계획 있음 15.7%, 검토 중 21.8%)로 나타남(「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 일반국민의 70.2%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매우 그렇다+그렇다)하며, 69.6%는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경기연구원, '20.2.)

현황 및 이슈

- ▶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후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기술·절차·관리체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분야별 세부 가이드 마련 가속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마련('20. 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20. 9.)
 - 보건복지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20. 9.)
 -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20. 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마련('20. 11.)



- ▶ 한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가 협력하여 범부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 3.)*을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 관련 사업도 활성화됨
 - 민간병원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기술 개선, 신약개발 등 연구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하여 빅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 마련('20. 9.)
- *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고도화 및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해 자발적 동의 및 참여를 바탕으로 2만 명 이상의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산·학·연·병 연구, 희귀 질환자 진단 등에 활용

- ▶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중앙부처 등의 결합전문기관 지정도 가속화됨
- ※ 결합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SDS, 통계청 지정('20.1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20. 10.),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지정('20. 11.) 등

향후 대응

- ▶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범정부 협의회 운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결합 시범사업 확대 추진
- ▶ 가명·익명처리 기술연구 및 실증모델 발굴, 데이터 결합·연계 체계 등에 대한 국제표준 연구 선도 및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연관키워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DPA)

배경

-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일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받아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통합('20.8)
 -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권, 조사·처분 등 집행권, 의안제출 건의권 등을 부여받음
 - 객관적 업무 수행이 필요한 기능(정보주체의 권리구제 등)에는 총리 지휘·감독 권한 배제하는 등 독립성 확보
- ▶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근간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정보위 역할도 부각



현황 및 이슈

- ▶ 개인정보위는 통합 출범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활용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조직 역량강화 노력
 -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및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결합 지원 등을 위한 유관부처 정책협의회 운영 등 부처 협력 강화
 -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 전 분야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회,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그룹 운영
 - 감염병 등 공공안전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체계적 대응
- ▶ 개인정보위는 '데이터3법' 개정 내용 및 통합 개인정보위의 미션·전략 등을 담은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을 수립('20. 11.)하여 실질적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목표로 '확실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

※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48개)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음

- ▶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을 약속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20. 11. 27.)하는 등 일원화된 감독기구로서 리더십 확립 노력
 -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조정·심의 의결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신뢰성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 제도 개선 연구 추진
 -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조직 역량(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연구·지원 기관 설치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비전 선포식」

향후 대응

- ▶ 3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범정부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운영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능동적 대응
- ▶ 개인정보 관련법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 마련, EU 적정성 결정 등 중·장기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단계적 대응 추진
- ▶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위의 법적지위 강화와 신용정보 관련 개인정보위와 금융위의 이원화된 감독체계 정비 요구* 등 중장기 이슈 개선 논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